

인터넷 특허도 진화해야 한다

이른바 닷컴 비즈니스로 불리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세상의 투자를 다 끌어모을 듯이 기세를 올리면서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에 대한 관심 또한 폭발적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에 관한 많은 논란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논란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에 특허권을 인정할 것인가' 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심사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에 특허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란에서는 "인터넷은 가상공동체이고 공동의 소유이므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배타적 독점권도 반대한다"는 카피레프트적 시각의 이념적 반대론자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은 자연현상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를 주면 안된다"는 법리적 반대론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년간 자유로운 창조 분위기 고취로 사회발전에 기여해온 특허권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이념적 반대론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법리적 반대론은 상당 부분 두번째 논점인 심사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문제라 생각한다.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허청에서 세계 각국의 심사기준과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현황을 감안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영업발명)가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증명돼야 하며 이와 더불어 데이터의 속성과 흐름, 데이터의 저장장치 및 처리 방식이 명시돼야 하고 그 명세서만으로도 제3자가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도 기존의 컴퓨터 관련 특허 및 소프트웨어 특허의 심사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관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른바 '묻지마 출원' 과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허용하면 당장 한국의 인터넷 비즈니스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대예언' 들은 위에 언급한 심사기준 및 기준에 의해 등록된 국내의 특허들을 잘 검토해보면 모두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인가. 특허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큰 문제 하나가 남아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특허권을 확보해 활용하거나 타인의 특허권 행사로부터 사업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선행기술(또는 선행자료)의 조사문제이다.

인터넷 영업방법, 광고방법 등은 유행이 바뀌고 사용이 끝나면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어떤 형태의 방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국가에서 누구에 의해 사용됐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모든 방법들을 특허로 출원하거나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는 한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공개기보 제도와 유사하게 e-비즈니스에 적합한 'e-비즈니스 아이디어 공개제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개인적 시각으로 볼 때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여 진화된 특허의 한 갈래일 뿐이다. 진화의 속도가 사업의 진화속도와 일치할 때 최선의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부가가치가 있는 곳에 사업이 있고 사업이 있는 곳에 특허가 있는 것 아닐까.

참조 : 한겨레

지식은 공유되어야 할 자산

토머스 제퍼슨은 일찍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는 영감 넘치는 비전을 제시했었다. 지식은 결코 혼자서 독점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2세기가 흘러 지식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된 요즘 시대에 제퍼슨의 이같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벽이 돼 온 경제적 요인은 다름 아닌 자본이었다.

요즘처럼 아이디어가 자본인 세상에서는 이런 장벽은 사라져야 한다. 또 이에 발맞춰 독점도 자취를 감춰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이디어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시스템이 오용될 때에는 이 같은 지식재산권 제도가 오히려 독점을 조장할 수 있다.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건은 지극히 일반적인 반독점 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MS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에 불합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는 흔한 사례다.

그러나 MS 소송은 정보기술(IT)산업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독점에 휩쓸리기 쉬운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허는 가장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형태다. 왜냐하면 특허권 소지자들은 유형적으로 드러나는 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녹아 들어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보호는 물론 아이디어를 창출한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 창의성을 더욱 도모키 위함이다.

1990년대는 특허의 번성기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특허수는 16만1천개로 10년전의 두 배나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지식의 가치가 비약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 새로운 종류의 특허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유전공학, 최근의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에 이르기까지 예전에는 특허 대상의 범주에 들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기술들이 특허를 따내고 있다.

미국의 특허사무소는 기본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굳이 이런 분야에도 특허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대두된다.

2세기에 걸쳐 간신히 변화된 법이 요즘같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도 맞느냐는 것이다.

예전같은 강력한 권리보호가 인터넷 시대에는 더이상 절실히 요청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자유로이 흘러다닐 수 있는 비특허영역이었다.

현재 미국 특허법의 문제점은 기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들을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개발돼 시장에 나오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요돼 개발된 신약이나, 목욕을 하다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나 모두 똑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조차(그는 인터넷 유통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자 몇가지 BM 특허까지 소지한 인물이다) 최근 공개서한에서 소프트웨어나 BM이 특허를 받을 경우 다른 분야보다 짧은 특허적용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한 이들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미국은 한가지 규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시키는 식의 특허시스템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특허는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다가는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4월8일자

참조 : 한국경제

타인 홈페이지 못 베긴다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를 무단 복사해 상업목적에 악용하는 등 인터넷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정책개발기획단은 14일 '2000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업무보고서의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타인의 홈페이지를 무단 복사해 상업목적에 악용하는 페이지재킹(pagejacking) 등 첨단기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페이지재킹의 경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위반시에만 처벌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행위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기사이트에 경고문을 발송하는 인터넷 일제검색, 전자상거래 우범사업자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등 FTC의 감시기법을 도입하고 검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인터넷 우범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시민단체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독려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로 이관해 소비자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문화돼 왔다"며 "미국처럼 이를 소비자보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조 : 국민일보

